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제정) 1994.01.07 조례 제241호
(일부개정) 2000.12.08 조례 제 482호
(전문개정) 2007.03.02 조례 제 683호
(일부개정) 2007.06.22 조례 제 704호
(일부개정) 2008.04.04 조례 제 741호
(일부개정) 2008.09.26 조례 제 757호
(일부개정) 2009.11.06 조례 제 811호
(일부개정) 2012.04.06 조례 제1081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44조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강남구립 체육시설의 설치·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11.06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체육시설"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·비용 등을 말한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2. "시설 사용"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09.11.06>
3. "사용자"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9.11.06>
4. "사용료"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 <개정 2009.11.06>
5. "일반강좌"란 통상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집단교육(실습)이 가능한 강좌를 말한다. <신설 2012.4.6>
6. "특화강좌"란 실습강의가 짧게 진행되고, 강의 공간이 다수의 인원을 받기 어렵거나, 개인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로 모집정원이 교실정원의 6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인 강좌를 말한다. <신설 2012.4.6>
7. "정예강좌"란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고, 개인지도가 필요한 강좌로 모집정원이 교실정원의 60퍼센트 이하인 강좌를 말한다. <신설 2012.4.6>

제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·관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·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9.11.06>

제4조(사용허가)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9.11.06>

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·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11.06>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<개정 2009.11.06>
2.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

3.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
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
1.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행사,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
3.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
제6조(사용시간)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09.11.06>

1. 5월 ~ 10월: 06:00 ~ 23:00 <개정 2009.11.06>
2. 11월 ~ 4월: 07:00 ~ 22:00 <개정 2009.11.06>

제7조(체육시설의 개방)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
제8조(사용료 등)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<단서 삭제 2012.4.6>

1. 3강좌 이상 수강 시 10퍼센트
2.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 5퍼센트
3. 고등학교 3학년(다만, 수험표소지자만 해당) 50퍼센트(3개월)

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

1. 강남구의 행사,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
2.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
3. 「공직선거법」 제141조에 따른 행사 <신설 2012.4.6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
1. 국가유공자 및 5·18민주 유공자 : 50퍼센트 <신설 2012.4.6>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동반한 한 명(동일강좌 수강시) : 50퍼센트 <신설 2012.4.6>
3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다만,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) : 50퍼센트 <신설 2012.4.6>
4. 수영장 월 사용료에 대하여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: 10퍼센트 <신설 2012.4.6>

③ 구민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
1. 50퍼센트<신설 2012.4.6>

가.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(다만, 막내자녀 기준 만 13세까지 적용한다) <신설 2012.4.6>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<신설 2012.4.6>

2. 30퍼센트 : 6세 미만의 영유아(다만, 미취학아동에 한정한다) <신설 2012.4.6>
3. 10퍼센트 :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(다만, 막내자녀 기준 만 13세까지 적용한다) <신설 2012.4.6>

④ 관리·운영 주체가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2.4.6>

1. 3강좌 이상 수강시 : 10퍼센트(3번째 등록강좌부터 감면 적용)
2.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 : 10퍼센트
3.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 : 5퍼센트
- ⑤ 모든 감면의 경우 1인 2강좌까지 가능하고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2.4.6>
- ⑥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사용료 감면의 경우 감면대상자가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. <신설 2012.4.6>

제10조(사용료 등의 반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06>

1.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
2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
3.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
4.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소비자기본법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<신설 2012.4.6>

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

1.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2.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
3.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

제11조의2(이용 등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본조 신설 2012.4.6>

1. 술에 만취된 사람
2. 성희롱자
3. 상거래 행위자
4. 다수의 이용 회원에게 언행 및 복장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
5. 그 밖에 미등록 사용자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12조(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)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06>

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
제13조(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) 체육시설물은 구청장이 관리·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원을 확보,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
제14조(체육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(이하 "운영"이라 한다)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

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

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1.06>

④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위탁기간을 정한다. <개정 2009.11.06>

제15조(수탁자의 의무)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·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,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지도·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9.11.06>

제16조(운영지원)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

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

제17조(감독)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, 2012.4.6>

제18조(위탁의 철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06>

1. 수탁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수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운영이 곤란한 경우
3.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

제19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1.06>

부칙

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6.22>

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04.0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09.2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11.0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4.6>

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